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6. 12. 20.

행정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11월 11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11월 21일

라. 상정일자 : 제198회 영등포구의회 2016년도 제2차 정례회
제4차 행정위원회(2016. 12. 5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재정국장 서종석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공기업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(안 제11조제1항)
- 공단 경영평가 기관 (안 제39조제2항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 : 김민기)

-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지방공기업법」 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인용 법령의 제명을 변경하는 하는 등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으로,
-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(2015.12.15.)에 따라 지방공기업인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 중에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를 삭제하고,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를 추가하여 공직자에 준하는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보임. (안 제11조제1항)
- 또한, 2015.12.29. 법 제78조의3(경영지도법인)이 폐지되고 법 제78조의4(지방공기업평가원의설립·운영)가 신설되어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의 경영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 중 “경영지도법인”을 “지방공기업평가원”으로 변경하였으며(안 제39조 제2항제1호)
- 그 밖의 인용법령 제명을 「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에서 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으로 변경하였고(안 제25조 제2항), 「정부조직법」에 따라 “안전행정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정비하였으며(안 제39조 제2항제4호) 자구나 체계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제 177 호
----------	--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6. 11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「지방공기업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시설관리공단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개정함

2. 주요 내용

가. 「지방공기업법」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

- 1) 공단 임직원의 결격사유 (안 제11조제1항)
- 2) 공단 경영평가 기관 (안 제39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기업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합의사항

- 1) 규제심사 : 원안동의
- 2) 부패영향평가 : 원안동의
- 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동의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(2016.10.20 ~ 2016.11.09, 20일간) 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미성년자
3.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4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제25조제2항 단서 중 “「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을 “「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”으로 한다.

제3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

제39조제2항제4호 중 “행정안전부장관”을 “행정자치부장관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1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<u>금치산자, 한정치산자와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3. <u>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4. <u>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</u></p> <p>5. (생략)</p> <p>②, ③ (생략)</p> 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(생략)</p> <p>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할 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</p>	<p>제11조(임원 및 직원의 결격사유)</p> <p>①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<u>미성년자</u></p> <p>3. <u>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</u></p> <p>4. <u>「지방공기업법」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</u></p> <p>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, 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5조(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

할 수 있다. 단, 제24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다. (제1호는 「재래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의 적용시 예외로 한다.)

③ (생략)

제39조(경영평가) ① (생략)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행하여야 한다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3의 규정에 따른 경영지도법인

2. 3. (생략)

4. 그 밖의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

----- . -----

----- 「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-----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9조(경영평가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.

1. 「지방공기업법」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----- 행정자치부장관-----
